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소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공포(1997년 6월 13일 대통령령 제15,392호)되어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개정취지는

1. 화재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보험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범위를 대형건물 중심으로 축소함(영 제2조).

2. 소방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의 대형건물에 대한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적용지역을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등 11개 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영 제3조).

3.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을 사망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부상(1급 기준)의 경우에는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후유장해(1급 기준)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영 제5조 제1항).

4. 화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따른 상해 구분 및 보험금액과 후유장해 구분 및 보험금액을 각각 상향 조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 전국의 특수건물은 연 1회 우리 협회의 방재전문 기술자의 안전점검을 무료로 받게 되고,
- 또한, 특수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함으로써 화재시 건물손해보상은 물론, 타인의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과 화재보험요율의 일부 할인(업종별 10%~30%) 및 화재 이외에 풍수재해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요 개정 내용

1. 특수건물의 범위(제2조)

개 정 전	개 정 후
① 국유재산법에 규정한 부동산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과 부속건물	① 변동 없음.
②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②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③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③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④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	④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⑤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⑤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⑥ 영화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방송시설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⑥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영화·텔레비전 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개 정 전	개 정 후
⑦ 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⑦ 삭제
⑧ 도·소매업진흥법에 규정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	⑧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각각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⑨ 유흥음식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⑨ 유흥주점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⑩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⑩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⑪ 아파트	⑪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관리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 아파트 단지안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⑫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물	⑫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⑬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2. 적용지역(제3조)

개 정 전	개 정 후
①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전주시와 인구 50만인 이상의 시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시로 한다.	① 전국

3. 보험금액

개 정 전	개 정 후
①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 중 사망의 경우에는 1천만원	① 사망의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부상의 경우 손실금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사망 및 부상의 경우, 손실금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4. 협회비 출연 등

개 정 전	개 정 후
① 수입보험료에 대한 협회비는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의 경감을 위하여 화재예방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입보험료의 10/100 범위 안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협회비는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안에서 협회가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고 경감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화재예방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보험료의 범위 및 산출방법과 협회비의 출연방법 및 출연시기에 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협회비로 출연할 금액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5. 안전점검

개 정 전	개 정 후
① 협회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0일내에 그 결과를 관할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협회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10일내에 그 결과를 당해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